

# 소 장

원 고 ○○○ (주민등록번호)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 전화·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#### 주식청약금반환청구의 소

# 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〇〇. 〇. 〇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# 청 구 원 인

- 1. 당사자관계
  - 피고는 소외 ◆◆회사(다음부터 소외회사라고 함)의 주주이자 이사이고, 원고는 피고와 이웃지간입니다.
- 2. 피고는 20○○. ○. ○. 소외 ◈◈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를

한 바 있는데, 소외회사는 소프트웨어개발업체로서 장래 사업전망이 밝고 항 성이 좋아서 코스닥시장등록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발행될 신주를 인수 보다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여, 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고 피고에게 주식 청약금으로 금 10,000,000원을 교부하였습니다.

- 3. 그런데 피고가 위 돈을 교부받은 뒤 연락이 없고 집에 찾아가도 만날 수가 없 어 소외회사로 문의한 바, 피고는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청약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- 4.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청약금 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○○. ○. ○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.

### 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

고소장

1. 갑 제2호증

청약금영수증

## 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

각 1통

1. 소장부본

1통

1. 송달료납부서

1통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 제	멸시효기간 척 기 간	○○년(□☞소멸시효일람표) <b>www.</b> kla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 수만큼의 부본 제출	고 불복절차 및 기 간	<ul><li>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</li><li>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 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</li></ul>
비 용	·인지액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2)참조 ·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기 타	• 민법 제756조 제1항은 "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"라고 규정하고 있는바,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이고, 사용자의 선임·감독상의 과실이 있다면 사용자, 즉 회사에 대하여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음.		

#### 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#### ※ (2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